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12. 1

제안자 : 연만흠의원 외

수정 이유

- 보은·옥천·영동 등 남부 3군은 내수면 어업비중이 30%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, 내수면연구소가 충주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을뿐만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부 3군의 중심지인 옥천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.

수정 주요내용

- 내수면연구소의 사무분장을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59조 신설).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(지소) 내수면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,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(신설)	<u>제59조(지소) 내수면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, 그 분장 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